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
고용허가제 도입 대응 투쟁을 위한
토 · 론 · 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 ·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2000. 10. 14
참여연대 2층 강당

순서

■ 사회 > 류은숙 (인권운동 사랑방 사무국장)

■ 기초발제 >

올바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 (약)이주노동자 투본 집행국장 이운주

■ 토론발표 >

고용허가제에 대한 각 진영 입장 발표 및 대응계획

민주노총 - 윤우현 정책국장

사회진보연대 - 윤예림 (불안정고용철폐팀)

경블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 정진우

이주노동자공동체 KASAMMAKO - J. Mark

개구리 귀족어

■ 종합토론 >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결성 선언문

이 땅에 이주노동자가 찾아오기 시작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아직도 진흙탕에 구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자본가의 금고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자본에 의해 유린당한 이주노동자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진정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출발이 여기에 있다. 이주노동자도 명철한 이성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자 노동자란 것을 자본가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이주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웠던 보호대를 뜯어내고 굳건한 노동대오로서 확연히 일어서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로써 이주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의 협잡술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모아낼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곧추세우고 우리와 연대하는 동지들의 힘을 모아 위력적인 실천을 펼쳐낼 것이다.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취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자본의 통제전략을 뛰어넘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며 던져주고 있는 껌데기뿐인 "노동 3권"의 본질을 날날이 파헤치고 진정한 권리를 쟁취하자.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최후의 잔재까지 말끔히 청소하자. 한국 자본이 만들어 낸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의 완전한 사면과 취업의 자유를 쟁취하자. 이주의 자유와 가족이 함께 몇몇이 살 권리마저 규제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

우리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2000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일단락 지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에 주목하며 독소조항 철폐와 이주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사안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한다. 우리의 투쟁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전환점이 되어 새롭고 변혁적인 이주노동운동이 생성되길 희망한다.

우리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일체의 차별과 억압을 지양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며 연대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여성, 외국인이라는 차별로써 끊임없이 분할하고 통제하려는 자본의 지배전략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과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며 투쟁할 것이다. 소외된 주변부 노동자로서 진정한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작은 한 발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이 작은 한 발은 열명에서 스무명으로 스무명에서 일백명으로 일백명에서 일천만 노동자와 함께 할 그 날을 만들 것이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노동해방, 이주노동자 해방의 그 날을 앞당기는 이주노동자 조직대오의 시작일 뿐이다.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투쟁에 나섰던 95년 네팔 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의 선배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 이주노동자의 든든한 희망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 해방세상을 기원하는 여러 동지들의 참여와 끈끈한 연대를 호소한다.

2000년 10월 3일 (약)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일동

[발제]

**연수제도 완전 철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뒀을 올리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보장과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집행국장 이윤주

한시적

1.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경

한국은 OECD 가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ILO 상임 이사국 진출 등 활발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UN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및 각 국제민중회의를 통한 발언을 통해 점차 국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ILO가 권고하는 수준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하여 적잖이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등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간 노동자들의 폭로와 한국 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심지어 반한 감정으로 인한 한국인 피습 등의 사건들 ;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연변 기아 기술 훈련원장 피습, 한국 관광객에 대한 위협행동 등등)을 통해 한국은 '인권탄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자본과 상품이 진출하는 중요한 시장인데 이 지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네팔 노동자들의 쇠사슬 투쟁을 비롯한 저항과 외노협과 같은 지원단체들의 폭로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요구, 농성, 그리고 각 센타들이 즐기치게 고용주, 경찰서, 노동부, 법무부 등에 대한 항의와 권리 주장 활동을 펴 옴으로써 정부와 자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변명과 회피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용허가제 도입은 철저하게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라는 자본의 이해에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기협을 비롯한 일부 자본가들에게 단기적으로 이해가 될 지라도 한국 전체 자본가에게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크다. 그러므로 전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중기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즉 단지, 노동부와 타 부처간의 파워게임이 아니다.) 이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말하는 것은 낯뜨거운 위선행위이며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이윤증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고용허가안의 본질은 “이주노동자 통제를 위한 정책”이다.

모두가 알 듯이, 중소기업사업체 사장들은 극심한 인력난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 말고는 더럽고, 위협하고, 어려운 일자리에 붙어나질 못해 공장을 굴리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주는 칼자루를 사장 자신이 쥐게 되고’ ‘고용증지나 고용기간 연장을 이유로 쟁의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보장해 준다면,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고용증지)를 하여도 ‘14일 이내에 고용증지 당한 자는 출국’해야 하므로 불법해고라 하여 법원에 쫓아 다닐 필요도 없으니 마음에 안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고용의 탄력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데 어느 사장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겠는가. 당장은 중기협이라는 외피에 의한 압력 때문에 중소기업주의 이해가 가려져 잘 안보이고 있지만 지난 96년도 ‘소기업연합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듯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장 측에서는 이주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부릴 수 있는 체계이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그 실내용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착취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수위가 심각하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고용비용이 상승한다는 중기협의 비판에 대하여 노동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지금도 이미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임금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현재 미등록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낮아 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합법적 지위를 사장으로부터 용인받아야 하는 고용허가제라면 능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낮게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월차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항목을 재조정하여 부담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힌트를 던지면서 기숙사와 식사 무료제공 등 부대비용을 폐지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동 3권을 형식적으로 보장받아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 이빨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비웃으면서 자본가들은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와 같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살인적 노동강도, 멸시천대 등 온갖 수탈과 탄압을 자행 할 것이다.

추석직후에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안, 특히 “고용연장 및 고용증지 철회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절대 투쟁에 나설 수 없도록 손발을 뭉뚱 묶어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 3권” 네글자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장들의 가슴을 위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놓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계약 갱신을 통한 고용 연장’과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기만해도 불법으로 몰아붙여 탄압하는 양상과 다를 바 없다. 이빨빠진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3권’을 준다고 선심쓰듯이 하며 국제사회에서 면피하려고 들 뿐 독소조항으로 겹겹이 둘러쳐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3.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 투쟁의 한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기협의 잇권을 건 천박한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그 자본의 본

질이 폭로되지 않고 있다. 중기협은 정확하게 “산업연수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에 반해 연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주류진영은 ‘고용허가제 도입’이 곧 연수제도 폐지라는 단선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제 사회 또는 종교 단체들은 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으로서 고용/노동허가제를 기본으로 한 입법청원안을 96년도에 낸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외노협은 5만여명 국민의 지지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청원안의 주요골자는 이주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허가안과 기존의 고용/노동허가제 도입 투쟁을 혼돈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연수생이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점에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연수제도가 편법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라는 고해성사를 하였지만, 고용허가안에서 다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던 ‘종속성’과 ‘편법적 노동력 착취성’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신장의 측면에서 추진하던 고용/노동허가제 도입 투쟁의 결과물로 지금의 정부안을 사고하고 그것이라도 김대중 정권 하에서 통과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향은 연수제도 폐지 투쟁의 목적과 고용/노동허가제 도입 투쟁의 의의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주노동자 운동을 자부해왔던 진영이 지속적으로 노정하였던 문제, 즉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을 대리해오면 본의 아니게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대상화 시켜왔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 대하여 적당하게 일말의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여야 말자하는 선택권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노동자의 투쟁은 늘 현재 진행형인 것이며 자신의 요구에 의한 자신의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생명과 자유를 잠시 장롱 속에 넣어 놓고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누구도 남의 생존권을 대리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달라질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쟁취할 미래를 설계하며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경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담보로 한 한국인 간의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고용허가제가 올해 안에 도입되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 내용적 개선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고용허가제 내용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행동)는 중기협의 저지활동에 일조하고 노동부에 행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위축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것이며 내용적으로 마땅치도 않다면 대안을 정리하여 로비하고 청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올 해 안에 통과되길 원한다면 노동부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뜰이나 “민간단체와의 합의”를 깃발로 내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는 자명한데, 정부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환상을 사회 내에 부추기면서까지 “올해 안”, “고용허가제 도입”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단 한가지 걱정이 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억압과 통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알면서도 지금 용인(비판적 지지)한다면 이후의 싸움은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지난시기, 노동운동의 몇몇 지도그룹은 “대세이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식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에 합의를 해줌으로써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통제력을 강화시켜 버렸고 노동자는 지금 최악의 고용불안의 시대를 넘고 있다. 그때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에 대하여 계속 가열차게 싸웠다 하더라도 그 법안은 통과되었겠지만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해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점, 누가 시작을 했든간에 이주노동자의 존재기반이 달라지려는 이순간에 우리로부터 원칙과 입장을 버려내고 공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얼마나 잘 하는가는 우리의 힘을 다지고 축적하는 일이므로 성명서 한 장 더 내는 것 보다 소중하다. '우리'라고 함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의미로써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요구를 세워내고 실천하는 것에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며,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결과보다 더 소중한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지지 않는 막연한 연대 성명을 많이 조직하는 것보다는 주변부노동자층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펼쳐 실질적이고 동지적인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는 이주노동운동의 올바른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서 존재되게 될 것이다.

96년도 투쟁의 올바른 계승은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 즉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하기에 고용허가제인가 아닌가, 올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권리의 지평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내는 것,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옹호하는 투쟁에 있다. 이 말은 우리의 투쟁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기에 투쟁의 요구를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맞추어서는 그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연수제도의 억압장치들을 쓸어버리는 완전한 연수제도 정책의 폐지이며, 연수생이든 아니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모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노동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전취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랍시고 이주노동자를 유린해 온 '늑대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는 '양의 털'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본질을 명확히 하여야만이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노동자를 더욱 옥죄어오는 쇠사슬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4. 이주노동자 투본의 투쟁방향

1) 투쟁방향 :

- (1) 연수제도 완전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 (2) 당면 '고용허가제 법안'의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쟁취한다.
- (3)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한다.
- (4) 강위력한 실천과 연대를 통해 굳건한 이주노동자 주체대오를 형성한다.

2) 투본의 주요 투쟁요구

- 하나, 연수취업제 및 현지법인 연수생 등 모든 연수제도 철폐하라!
- 하나, 고용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 금지규정 철폐하고 노동 3권 완전 보장하라!
- 하나, 이주노동자의 직업/사업장 선택의 자유 보장하라!
- 하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하고 자유로운 취업·거주의 자유 보장하라.

3)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한 투쟁사안과 계획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①사업장 선택의 자유 (초기 취업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용주가 일방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상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③업종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 노동 3권 및 노동관계법 전면 보장(고용관련 쟁의 금지 결사 저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 ①고용불안, 비정규직화 반대(최소한, 재계약이 아니라 고용연장으로 할 것)
- ②고용계약 연장 시 계약조건 저하의 소지가 있으므로 "14일 규정, 고정사업장 노동, 고용중지" 규정 철폐 및 노동법 "해고"규정으로 적용.("고용중지" 시 권리구제 방안 명문화(또는 노동법 적용))
- ③"14일 이내 출국"의 명문화로 노동권 실현을 실제로 억압, 노동운동 탄압소지 철폐
- ④불법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합법법 상관없이 '노동3권, 노동관계법' 전면적용 쟁취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⑤4대 사회보험 적용
- ⑥입국 후 국가 기금으로 교육(한국어, 산안, 기초기술) 및 재교육 실시 보장
- ⑦여성이주노동자의 성희롱, 성차별 금지, 고용 및 임금 차별 철폐, 성폭력 처벌을 위하여 여성 노동자 관련 법안 전면 적용 (예 ;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등)

● 단기로테이션 정책 폐지 /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사면

- ①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 합법적 체류와 취업의 자유 보장
- ②노동허가제 실시 (예; 최소한 유럽형 노동허가 비자),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규제 철폐
- ③3년 체류기간 한정 및 고용중지 시 10년 내 재입국 금지 등 독소조항 철폐
- ④향후(어떠한 고용(노동)허가제가 되더라도) 불법체류자 통제 및 단속 강화 및 권리 차별에 강력 대응

'산업연수생제도 철폐'는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본다. 관련해서 지금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성CC 등의 골프장 캐디, 생활설계사, 학습지 교사, 놀이방 교사, 고등학생 실습생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억압 상황을 함께 폭로하고 실질적인 노동자로 인정받는 투쟁에 연대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문제를 똑같이 가혹하게 수탈받고 있는 한국 주변부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제기한다면 국적을 초월한 노동자들 간의 단결에 소중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요구이다. 이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게 계속 묶여 있어야 하며 그 사업장을 벗어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14일 이내에 강제출국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 제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분적 예속을 당하면서까지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제적 예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예속을 포함한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가 '사업장 이탈 금지'인데 그대로 연장되어 가고 있다. "초기 취업 시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고용 중간에라도 직장을 바꾸고 싶으면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권 완전 쟁취 - 노동 3권 및 노동관계법 전면보장"은 형식상 정부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관건은 그의 실현일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조문화 되어 있다면 이후에 권리의 지평을 넓히는 투쟁의 근거가 되므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관련 쟁의 금지", "14일 이내 출국" 등과 같이 그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제도에서도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파업 등에 참가할 경우 14일 이내에 강제출국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헌법에는 온갖 미사여구로 '인권'을 조장하고 있지만 각종 하위법들과 법령, 사규 들로 헌법의 인권조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수습점의 장벽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고용쟁의 관련 금지"일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부터가 향후 벌어질 노동 3권 실현 투쟁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결사반대하고 연대 노동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4대 사회보험 적용"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요구"를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걸고 비슷한 처지의 주변부 노동자와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며 이 요구 속에는 향후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동등한 법적 권리 실현을 내포하여야 한다고 본다.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 합법적 체류와 취업의 자유 보장"은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되든 안되든 싸워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사면의 문제를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면을 안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시행시기까지의 인력란이나 출국 비행기 편수의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조건때문에 일부 사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 일뿐 인권의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한국은 지 3년 안된 사람들은 돈도 많이 들여서 왔을텐데, 돈 좀 벌다가라고 하고 3년 넘은 사람들은 벌만큼 벌었으니 가족에게로 보낸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면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만 사면받은 것일 뿐 취업은 여전히 불법으로 남는다. 그들에게 고용허가 관련 비자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역시나 그들은 미등록 노동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다수의 합법노동자와 소수의 불법노동자 분포가 고착화 될수록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제 권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이해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법안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로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불법취업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억압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류의 통제와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인권성, 반노동자성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협 시기 이주 노동자 운동에 대한 단상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정진우 간사

1>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현재 민주당과 노동부에서 제출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입한다는 데에 진일 보한 측면이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완벽한 노동권 보장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여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신분적으로 예속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한국 노동자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기존 연수취업제의 지속을 주장하는 중기협과 일부 중소기업의 반발이 상당하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편견, 차별, 배타의 정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점, 국내 노동운동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도의 미비, 이주 노동자의 조직화 미약 등의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면 당면 투쟁의 핵심 슬로건은 연수취업제의 철폐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수취업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집단의 세력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논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은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여진 중기협 관계자들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는 미흡한 고용허가제의 당정안의 통과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연수취업제의 반대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도 중요한 이슈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2> 현 시기 투쟁 방향

1. 연수취업제 철폐

지금까지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 방식이었던 연수취업제의 편법성과 반노동자성, 그리고 연수취업제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인 중기협에 횡포 등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렇기에 연수취업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중기협을 대표로 하는 집단과의 비타협적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불법체류자 사면 및 합법적 노동권 보장

불법체류자의 사면없이 외국인력 도입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에 제도의 개선논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쟁취해야 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과 사

이간쟁이 투쟁 : 연수취업제 철폐를 위한 투쟁이 전제조건 공노회
노동허가제 : 연수취업제 철폐
고용허가제 : 연수취업제 철폐

면 후의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철폐

민주당과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안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업장 이동의 부자유, '고용 중시 시 14일 이내의 출국', 단기로테이션 정책, 고용허가제 도입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브로커에 대한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올바른 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중·장기적 운동방향

1.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별, 배타성 극복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에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인식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외국인,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 배타성을 극히 심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무참히 유린될 것이다.

2.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는 일정정도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단체, 노동조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 노동운동과 함께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가 자신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를 또다시 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을 통한 한국인의 교육도 이주노동자의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함께 노동자로堂堂하게 노동하고,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리하며

현재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쟁의 내용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투쟁의 목표와 타겟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논의와 나눔 속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이주 노동자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현장에서 즐겁게 만나고, 토론하고, 실천합시다.

KASAMMAKO Position Paper
on the Proposed Employment Permit System

J. Mark

It is true that the current Industrial Trainee System has resulted and is causing injustices to many migrant workers, undocumented or documented. They are being treated unfairly as salary are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local workers despite that they are engaged in the same amount of work, none or limited benefits are provided for them, most of us work in 3D jobs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usually shunned by local nationals, they suffers from poo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Long working hours, non-payment or delayed salaries, verbal and physical abuses plus various kinds of exploitation are but some of the reasons why documented migrants are being forced to run away from their original employer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may find jobs to abetter company of their choice and can decide to stay as long as the employer offers a better condition. But these migrants are still stuck to the reality that their rights are still not recognized and respected by their employers. Some employers are in fact making advantage of this. Much as the migrants rights are violated, they suffer from discrimination, lack of medical insurance, no guarantee of protection in industrial accidents, aside from uncertain situation side by side with the threat of being fired if they complain. Above all, documented 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prone to different types of abuses and exploitation.

Recently the clamor to change the existing Trainee Permit System has broadly surfaced following the migrants calls for better condition. Demands to adopt a more suitable system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address the call of Migrants, NGO's, different Migrants Cen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s now being considered. And we welcome these efforts so long as it will improv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migrants.

Any migrant worker will agree to such a system for as long as it will be fair and beneficial to both sides. It is a fact that any system that is conducive to social and individual wellbeing of migrants is totally acceptable to the migrant's sector.

Based on our analysis and careful scrutiny to the proposed Employment Permit System, it is then our prerogative to express opinion and views from the perspective as migrant workers with regard

to this issue since we are the ones who will necessarily follow from a set of conditions

The following are some of our views and opinions to the proposed EPS:

1. Once approv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PS will only qualify the "new comer". The proposed bill doesn't covers the CURRENTLY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Or if there such a provision, there is no clear effective mechanism on how could they become documented and avail the protection embodied in the proposed provisions.
2. As the Korean Labor Basic Law may be applied (such as the Labor Standard Law, Right to Collectively Negotiation, Industrial Safety Law, etc) according to the bill. But the employment permit is limited to only one year and extendable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s. As the provision deem necessary to apply the three basic law, the assurance for the migrants to apply the said laws remain futile. Once the migrant workers demand or exercises these rights with in the period of one year, the employer can simply fire the migrants or will not allow to an extension period in the company.
3. The bill doesn't guarantee the freedom of employment. Once they get fired or decided not to continue working in the company, the migrant workers has no right to seek new job while in Korea other than returning back to home country and re-apply, which on the other hand has another restrictions for them to return. This will also lead the migrants to pay another fees, taxes, & efforts. This again is a burden that is to expensive to for a migrant to bear.
4. The status of the currently employed as undocumented worker remain uncertain. There is no such clear provision pertaining on how can be recognized and their right protected. In the 14 days grace period upon termination or finishing the contact, the employer can easily force the migrant to sign unfair contract or else the term of extending for another year will be denied. After working for 3 years and eventually become skilled workers, there is no assurance that they can stay longer if they wanted to.
5. The provisions does not provide a need fo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the Sending Government. The responsibility lies solely to the host government. It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sending government to engage with the Host government and tak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nationals since the sending government benefits from the remittances, taxes collected to the migrants.
6. There is no education program for the migrants provid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uch as Industrial Safety, Korean labor law etc.)

7. Social Security, medical insurance is not assured.

8. There is no such provisions that guarantee the rights and welfare of women migrants against sexual violence.

In behalf of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as the proposed bill necessitate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migrants, we strongly urge those concern to take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abovementioned statements.

(참고) - [투본논평] 고용허가제 도입 국회 공청회에 부쳐...

연수취업제 폐지요구를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등치시켜

이주노동자 통제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기만적인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 고용허가제 도입 논쟁의 핵심은 연수취업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보장에 있다. -

2000년 대한민국 국회, 언제나 그랬듯이 목하 파업중이며 이천투구의 산실인 이곳에서 또 한번, 정도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애초 이 제도는, 현재 한국 땅에서 실질적인 노동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제안되었다. 또한 연수생제도가 많은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제기된 제도이다. 하기에 현행 연수생제도의 철폐는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보장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공청회는 이런 원칙과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 버린 자리였다. 이권에 눈이 먼 일부 중기협 관계자 및 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는 일부 사용자들이 총동원 된 한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모든 문제점을 뒤로 한 채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보자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로 그 논쟁을 몰아감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反)노동자성과 반(反)인권적 실체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말았다. 현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도를 단순하게 중기협이 반대를 하고, 인권단체들이 찬성을 하는 것처럼 이분화시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모든 노동, 인권단체들이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그 태생자체의 편법성 및 반(反)인권성에 대한 민중의 저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싶어하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요구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 등의 저항이 있다고 하여도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연수제도의 폐지라는 역사적 요구를 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안점인 것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안은 이미 대만에서 악명을 날리며 시행중인 대만식 고용허가제를 본 떠 온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용허가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어떻게 노동자를 통제하고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문제, 즉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증지를 당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절차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등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또한 고용기간을 1년 단위로 제한하고 재계약의 선택권을 사용자에게만 줌으로써,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권한을 악용하여 노동권에 대한 탄압 및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협이 잇권을 노동부가 가져가는 형식일 뿐 연수제도의 억압장치를 온존 아니 심화시키며 이 땅의 20만 불법체류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고용허가안은 오히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고용허가안이라면 그것을 무원칙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원칙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안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이미 이에 대하여 무수하게 지적을 하였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공청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일방적인 찬반 논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더욱더 확연해 진다.

또한 그나마도 공청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 중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토론자들에 의해서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도 중기협의 저열한 '고용허가제 반대' 아우성 속에 파 묻혀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본말이 전도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흘러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옛말에 눈발에 첫발 내딛을 때, 함부로 내딛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 출발이 신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통과 계획을 규탄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전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많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및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연수취업제 및 현지법인 연수생 등 모든 연수제도 철폐하라!
- 고용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 금지규정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 보장하라!
- 평등한 노사관계 보장하라!

2000년 10월 11일
(약) 이주노동자투쟁본부